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근거법의 일원화 등〉

-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08호)
-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09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목적의 변경 및 근거법의 일원화	4
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연체 최고한도의 하향 및 징수유예제도 도입	11
3.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 추가	15
※ 참고자료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현황	19
2. 원자력기금 원자력규제계정 현황	20

I. 제안경위

[원자력안전법]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나. 발의일자 : 2024. 9. 27.

다. 회부연월일 : 2024. 9. 3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나. 발의일자 : 2024. 9. 27.

다. 회부연월일 : 2024.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산입되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

로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부담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부담금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1조의2).

또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의 하향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제111조의2, 제111조의3 및 제111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목적의 변경 및 근거법의 일원화

가. 개정안의 내용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함)」 개정안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부과목적은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목적 달성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제111조의2제1항·제111조의4제1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 제45조의2·제45조의3 삭제).

현행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위원회는 <u>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승인·등록·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관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신설>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 <u>제1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u>----- ----- ----- ----- ----- -----. 1. <u>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신고·등록·사전검토·교육</u>

<신 설>

② ~ ④ (생 략)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
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원자
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
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
른 가산금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
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4. ~ 11. (생 략)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원자력
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

훈련 또는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
독업무자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
조제2항에 따른 핵물질의 국제운송
을 위탁받은 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
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과태료(과태
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4.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승인에 관련된 심사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검사를 받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2.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심사·검사·교육 및 평가를 받는 원자력사업자

②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은 원자력 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키는 관련 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의3(강제징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

<삭 제>

<u>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u>	
--	--

나. 검토의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관리에 소요되는 규제 비용¹⁾을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²⁾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담금 부과 근거법인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에 위탁한 업무(심사·검사·교육·평가 등)³⁾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현행법은 심·검사 등의 업무를 위해 심·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1) 산정기준: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기준단가

2) 징수대상: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경희대학교 등

3) 「원자력안전법」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방사능방재법」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정의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규정 및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은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음. 그러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⁴⁾으로, 위탁업무 외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원자력 안전관리 업무에도 사용되고 있음.

개정안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목적은 「원자력안전법」 제1조 및 「방사능방재법」 제1조⁵⁾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

4)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원자력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
3. ~ 11. (생략)

②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국제협력
9.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른 보상
10.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

5) 「원자력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

로 규정하는 것으로, 부담금의 정의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담금 사용용도의 오인 가능성을 해소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부담금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부담금 부과목적을 규정하는 데 있어 대부분의 입법례가 개별 법률의 목적 조문을 인용하기 보다는 부담금 부과목적을 직접 서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경우에도 ‘원자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은 현행 「방사능방재법」에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근거조문(강제징수 포함)을 삭제하고, 부담금 부과 근거법률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있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 및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별표4의2 등에 따라 원자력안전부담금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참고자료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현황)을 감안할 때, 근거법률을 일원화하는 것이 부담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6)에 따른 별표에 근거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능방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

법률이 규정되어야 하므로, 현행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에 근거조문을 「방사능방재법」에서 삭제할 경우 동 별표에서도 삭제될 필요가 있음.

또한, 당초 개정안에는 제111조의2제1항제1호에 ‘지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근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핵주기시설 규제 일원화에 따른 ‘지정’이 삭제(2025.10.23. 시행)된 바,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는 동 개정안에도 삭제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업무의 특성상 위탁업무의 실제 업무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산정기준에 따른 부담금 규모를 산출내용을 명시하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2021년), 현재 허가시설별 정액제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57.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연체 최고한도의 하향 및 징수유예제도 도입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체납된 부담금의 20%로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제111조의3).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생략)	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위원회는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11조의3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⁷⁾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연체 시 가산금은 최대 5년(60개월)까지 부과(월금 대비 43.15%_가산금은 납부금액의 3%, 중가산금은 최대 5년까지 매일 0.022%)되고 있음.

또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연체금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 시 부담금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중략)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여 각 부처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하였음.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

구 분	세부내용
연체금 부과수준의 합리적 기준 설정	☐ 유사 연체금의 부과기준(연이율, 최고한도) 및 「민법」상 법정이율 등 감안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연체금 설정 - (예시) 연이율 상한은 6%이내, 최고한도는 원금 대비 30%이하 설정 - 12개월, 60개월 등 부과기한 방식 설정하더라도 위 예시기준 준수
천재지변·감염병 상황 구제장치 도입	☐ 천재지변·감염병 등의 상황 시 원금·연체금 부담을 일정수준 구제할 수 있게 법제화로 공공책무 강화 - (예시) 감면·감경·납부유예 중에서 최소 1개이상 마련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원자력 안전관리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체납된 부담금의 20%로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조문 문구에서 ‘대통령령에 따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이 개정되거나 개정안이 발의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법률 개정 사례>

법률명	개정전	개정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1.2. 개정)	제23조(대부료 등) ⑦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 「국세	제23조(대부료 등) ⑦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대부료등에 대하여

법률명	개정전	개정 후
	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거나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금은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2.10.18. 개정)	제24조의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④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부담금의 <u>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의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④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부담금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23.6.20. 개정)	제 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⑥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⑥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3.12.26. 개정)	<신설>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3.3.28. 개정)	<신설>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로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안전문화 확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 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제 111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 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 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②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②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u>
5. ~ 8. (생략)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u>10.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u>	<u>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u>
9. (생략)	<u>11. (현행 제9호와 같음)</u>
<u>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u>	<u>12.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재단의 기관 운영</u>

<u>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u> <u><신 설></u> 11.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u>영에 필요한 기본경비</u> 13. <u>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조의5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u> 14. (현행 제11호와 같음) 15. <u>그 밖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원자력 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개정안 제111조의4제2항 제5호, 제10호 및 제13호에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로 추가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원자력기금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법률에서 기금의 용도로 명확히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추가된 기금용도와 기금사업>

신설 조항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5.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원자력 안전기반조성 (1701-401)	· 원자력안전규제정책기반조성 - 원자력안전실태조사, 정책개발 기술지원 등
	방사선 안전기반조성 (1701-402)	· 방사선이용 신고기관 실태조사 · 종사자 방호기록 및 규제정보 관리·분석 · 방사선규제정보분석 및 관리
10.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방사선 안전기반조성 (1701-402)	· 국가방사선안전교육훈련강화

신설 조항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확산		· 방사선안전이해확산
14.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기타운영비(안전규제계정)(7111-201)	· 기타운영비 -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에 대한 관리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1.

개정안 제111조의4제2항 제12호에서는 기금의 용도로 한국원자력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추가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제111조의4제2항 제10호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경우만 두 기관과 동일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산하기관임에도 누락되어 있어 포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운영비는 모두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⁸⁾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111조의4제2항 제13호에서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동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법령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관련 법률을 인용하도록 조문을 수정⁹⁾할 필요가 있음.

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2031-40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031-40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2031-403)

9) 제111조의4제2항제14호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14.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조)	14.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

문 의 처
02)6788-5231

의5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항 단서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	------------------------------

참고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현황

□ 개요

- 원자력안전관리에 소요되는 규제 비용을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

* 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2

※ 징수실적(억원) : ('19) 1,039 → ('20) 1,079 → ('21) 1,116 → ('22) 1,123 → ('23) 1,181

□ 산정방식 등

- (산정기준)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기준단가”로 산정
 -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수탁기관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업무에 투입한 인원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
 - (기준단가)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기준 규제전문기관 평균 보수액을 기반으로 산정

부담금징수 대상자		기준단가
발전용원자로 사업자등	① 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신청자 ② 핵연료주기사업 허가신청자 ③ 방폐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신청자 ④ 발전용원자로설치자,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 ⑥ 핵연료주기사업자, ⑦ 방폐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	직원 1명의 근무일당 평균 보수액 + 직접경비(인건비의 84.9%) + 간접경비(인건비의 54.73%)
발전용원자로 사업자등을 제외한 자	① 연구·교육용 원자로등 건설허가신청자, 연구·교육용 원자로등 설치·운영자 ② RI·RG 업체	직원 1명의 근무일당 평균보수액

- (부담금 고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의 규모를 산출내용을 명시하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안위고시)을 통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
- (변동사유) ①업무량은 안전규제 심·검사 주기, 안전현안 발생여부 등의 요인에 따라 매년 변동, ②기준단가는 규제전문기관의 인력 변동(퇴직, 채용)에 따라 요인 발생

□ 개 요

- **(목적)**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
- **(근거)** 원자력진흥법 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 **(기금관리주체)** 원자력안전위원회
- **(주요연혁)**
 - '15. 6월 :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설치 근거 마련(원자력진흥법 제17조 및 제18조,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
 - '15.12월 : 기금 회계기관 지정 근거 마련(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조의5)
 - '16. 1월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신설·운영

□ 기금 자원 및 용도

재 원	용 도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 과징금·과태료 ○ 보상료 ○ 정부출연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 방사선 및 방사선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 원자력통제 ○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 관련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관련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국제협력, 보상 ○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등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 (B)	증감 (B-A) %	
수 입	○ 자체 수입	147,384	146,209	161,943	15,734	10.8%
	－ 법정 부담금	118,118	120,103	123,165	3,062	2.5%
	－ 기타경상이전 수입	10,343	10,226	10,397	171	1.7%
	－ 과징금	5,520	2,728	5,520	2,792	102.3%
	－ 과태료	192	299	275	△ 24	-8.0%
	－ 가산금	7	3	3	-	-
	－ 기타채 산이자수입	3,204	2,850	7,583	4,733	166.1%
	－ 민간출연금	10,000	10,000	15,000	5,000	50.0%
	○ 여유자금회수	182,440	196,832	218,206	21,374	10.9%
	－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14,230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0,223	97,764	109,103	11,339	11.6%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7,987	99,068	109,103	10,035	10.1%
	합 계	329,824	343,041	380,149	37,108	10.8%
	○ 사 업 비	123,625	123,512	126,866	3,354	2.7%
지 출	－ 원자력안전기반조성	23,237	25,089	26,125	1,036	4.1%
	－ 방사선안전기반조성	7,435	6,912	6,940	28	0.4%
	－ 원자력안전규제	61,313	60,133	62,159	2,026	3.4%
	－ 방사선안전규제	29,654	29,472	29,736	264	0.9%
	－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1,986	1,906	1,906	-	-
	○ 기금운영비	1,418	1,323	1,283	△ 40	-3.0%
	－ 인건비	563	578	596	18	3.1%
	－ 기타운영비	855	745	687	△ 58	-7.8%
	○ 여유자금운용	204,781	218,206	252,000	33,794	15.5%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25,480	109,103	126,053	16,950	15.5%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79,301	109,103	125,947	16,844	15.4%